

인천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730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7305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단27110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법률상 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성준

원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C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진렬

변론 종결2021. 11. 4.

판결 선고2021. 12. 16.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단27110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7. 24. 접수 제2704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B에 대한 채권

- 1) 주식회사 M는 2017. 10. 25. L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K회사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359,286,484원의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 2)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M와 B, 참가인은 2017. 11. 17. '주식회사 M는 참가인에게 360,000,000원을 변제하고, B은 주식회사 M의 참가인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3) 주식회사 M와 B은 참가인을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27. '참가인의 주식회사 M, B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인천)2019나1098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 1) B은 2012. 12.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9.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의, 2015. 11. 25.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2017. 2. 23. 채권최고액 70,8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3) B은 2017. 11. 27. D에게, 2018. 6. 1. E에게, 2018. 6. 1.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4) 위 D, E, N의 각 근저당권은 2019. 7. 24. '2019. 7. 2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5) 피고는 2019. 7. 24.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6) B은 2019. 10. 21.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 1) 참가인은 2019. 12. 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2) B에 대하여 2020. 3. 13.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0회단1), 법원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원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2020. 4. 16.부터 2020. 5. 6.까지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으로 정하였다.
- 3) 원고는 2020. 5. 22.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 4)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0. 9. 18.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법원은 같은 날 그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B은 2019. 7. 24.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는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통상적인 대출 절차에 따라 B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하 '수익자'라 한다)이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단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을 제1, 2, 3, 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1973. 3. 2.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합계 454,800,000원의 근저당권 3건을 설정하고 있었던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에 앞서 B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제출받고, 신용정보조회서, 부동산담보비율표, LTV·DTI 검증비율표, DSR 산출표, 신용조사서, 상환능력확인서, 감정평가서, 담보대출 취급자 의견서 등을 작성한 다음 여신심의회 심사, MCI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2019. 7. 29. B에게 추가로 대출한 사실,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22,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B에 대한 대출금 규모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㉔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4건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522,000,000원으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미치지 않는 점, ㉕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D, E, N의 각 근저당권 말소를 전제로 피고에게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안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한 피고의 근저당권 4건의 피담보채권 합계 450,000,00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참가인을 비롯한 회생채권자 등이 피고의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처럼 채권조사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채로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가 확정되어 그에 대하여 불가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인으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피고의 회생담보권을 시인한 이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원용일

판사오기두

판사소병진

별지